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82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 · 박중화 · 장우윤 ·
서영진 · 문종철 · 박기열 ·
유광상 · 신원철 · 이윤희 ·
유동균 · 우형찬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·양육방법, 보호자의 역할, 영유아의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영유아의 생명·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제21조의2 신설).

나. 시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영유아 인권 등의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보육교직원의 책무)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·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·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·양육방법, 보호자의 역할,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7년 9월 15일 이후 시행한다.

